

의안 번호	228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구강서원 운영·관리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5. 30.(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6. 13.(목)

2. 제안설명 요지(미래전략국장 노선숙)

가. 제안이유

-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24. 5. 17.)되고, 연계 법률이 제·개정('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등
- 문화재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다. 근거법규

- 「국가유산 기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옥범)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 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 되고, 연계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국가유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 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 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 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 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

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 · 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 · 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 ⑫ (생 략)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 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 · 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

2. “전형(典型)” 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라. 천연보호구역
 -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 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 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 · 도자연유산” 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 ·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 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 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 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